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안 번호	1936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서울시 가구 중 22.2%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반려인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숙박시설 부족으로 숙박·당일 여행도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 한해 13만4천마리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비율도 높고, 불법매장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나. 이에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반려동물 관광 여가문화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 5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양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한 본 실시협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
- 당 사 자 : 푸른도시여가국장 - 연천군수

- 목 적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결정

나. 추진경위

- ('24.01.05.)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 체결

다.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권리와 의무,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 의무,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연천군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 기여방안, 지역주민 혜택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공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실시협약(안) 구성

- 전체 구성 : 제24조로 구성
-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권리와 의무(제3조), 사업내용(제4조), 사업기간 등(제5조), 사업계획서의 변경(제6조), 서울특별시의 의무(제7조),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제8조)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제9조), 연천군의 의무사항(제10조), 지역발전 기여방안(제11조), 지역주민 혜택(제12조), 사업의 시행승인과 변경승인 등(제13조)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제14조), 공사의 조기착수(제1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제17조), 문화재의 처리(제18조),

민원처리(제19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제20조), 협약의 해지 등(제21조), 협약의 종료(제22조), 관련 법규의 적용 등(제23조), 분쟁의 해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도부터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 민 주무관(☎2133-7649)

- 붙임 1. 실시협약서(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이 2024. 1. 5. 체결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상호 협력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서”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협약 당사자”란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이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시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 ④ “본 사업부지”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연천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사업의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위치 및 면적, 총사업비 등은 설계, 공사, 관련 절차 이행, 협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위치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118,519㎡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39,273㎡
- 2. 예정 총사업비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47,685백만원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 8,592백만원
- 3. 사업내용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캠핑장, 문화센터 등)의 조성 및 운영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의 조성 및 운영

제5조(사업기간 등)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본 사업의 건설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를 말한다.

-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6년 12월 31일까지
-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2027년 5월 31일까지

③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협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기간을 말한다.

④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지연, 기타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후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착공 및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천군과 협의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협의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 사업추진 취지, 목적과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추진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완료 후 협약 당사자의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위원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규정된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연천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기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8조(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반절

차 및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시행할 경우 연천군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연천군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연천군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 적절히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서 상 제안한 본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진입도로: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2. 상·하수도시설: 본 사업의 사업구역 경계부까지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
3.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세부사항은 본 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연천군의 의무사항)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된 구역까지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② 연천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을 협약 제9조의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연천군은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반 조성 공사 착공 이전까지 부지 내 용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한다.

④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을 고시한다.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본 사업시설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채용 시 연천군민이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한다.

제12조(지역주민 혜택) ① 서울특별시는 연천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며, 본 사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물(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연천군민과 서울특별시민에게 동등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과 변경승인 등) ①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천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인 연천군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연천군이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연천군이 판단할 경우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 전 매입한다.

② 제1항의 매입 부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을 통해 토지평가 후 연천군은 적정한 보상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전을 전제로 평가하여 매각한다.

④ 연천군은 본 사업부지 매각 전이라도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기반 조성 공사에 한해 기반 조성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서울시가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착수)

① 서울특별시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 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천군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미군공여구역법」 제11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의 조기착수)

① 본 협약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신속 조성이 필요하다고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토지매입 전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연천군은 기반 조성공사 이전에 부지 성토를 위한 양질토사 반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특별시도 양질토사 반입에 최대한 협조한다.

③ 부지 내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요청이 있을 경우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불량 토사 및 폐기물로 확인될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외부 반출한다.

제17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① 서울특별시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즉시 연천군에 통지하고 연천군과 협의 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천군 또는 관련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의 처리)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2016~2018년 시행한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는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한다. 다만, 그 결과가 서울특별시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상대방에 민

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천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서 서울특별시의 의무 및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본 협약에서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 규정한 사항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연천군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협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민원이 제1호의 서울특별시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설계, 시공, 운영)에서 발생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 다. 민원이 제2호의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연천군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제20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미군공여구역법」상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연천군 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상의 담당 업무 및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조성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정책의 변경 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협의하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 따른 비용 정산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제7조제5항, 제11조 및 제12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간내 효력이 있다.

제23조(관련 법규의 적용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군공여구역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분쟁의 해결)

-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서울특별시 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본 협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6.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대리하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 수 연 ①

연천군

연천군수 김 덕 현 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구분	세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계(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세출	1,618	44,917	1,150	없음	없음	47,685
	반려동물테마파크	1,618	44,917	1,150	없음	없음	47,685
	반려동물추모관	320	7,500	없음	772	없음	8,592
	소계(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 총 비용(a-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4. 재원조달 방안 :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시비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지방세수입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세외수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채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계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5. 덧붙이는 의견

- 향후 물가상승률, 실시설계 과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 존재

6.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총계	연차별 소요예산		
			' 24	' 25	' 26
		47,685	1,618	44,917	1,150
보상비	-용지매입비 : 12,784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253백만원	13,037		13,037	
공사비	-공사비 : 27,851백만원 *도시공원중 주제공원 평균단가,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27,851		27,851	
용역비	-설계비 : 1,484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감리비 : 2,279백만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3,763	1,484	2,279	
기타	-설계의도구현 비용 : 54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측량 및 지반조사 : 134백만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각종 수수료 : 18백만원 -집기,비품구입비 : 1,132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 1,696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3,034	134	1,750	1,150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총계	연차별 소요예산			
			' 24	' 25	' 26	' 27
		8,592	320	7,500		772
보상비	-용지매입비 : 735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13백만원, 용지부담금 : 312	1,060		1,060		
공사비	-공사비 : 5,546백만원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5,546		5,546		
용역비	-설계비 : 284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감리비 : 525백만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809	284	525		
기타	-설계의도구현 비용 : 27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측량 및 지반조사 : 36백만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각종 수수료 : 11백만원 -집기,비품구입비 : 761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 342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1,177	36	369		772